

[별표 1의2] <신설 2000.8.10>

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기준(제19조의4관련)

위 반 사 항	근거법령	처분기준
1. 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고용하여야 하는 환지사의 수에 3인 이상의 환지사가 미달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미달된 환지사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45조의6 제1항제1호	등록취소
2. 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고용하여야 하는 환지사의 수에 2인 이내의 환지사가 미달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미달된 환지사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45조의6 제1항제1호	업무정지 1년
3.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5조의5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사실이 판명된 경우	법 제45조의6 제1항제2호	등록취소
4. 업무정지처분기간중에 환지업무를 수행한 경우	법 제45조의6 제1항제2호	등록취소
5.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환지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환지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	법 제45조의6 제1항제2호	업무정지 6월